



사학에 대한 감가상각회계의 도입 필요성과 특례 규칙의 개정 방향

권혁대 | 목원대 경영광고학부 교수

I. 서론

금년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듯이,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은 해마다 학생들과의 등록금 협상으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등록금의 인상요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는 회계의 목적을 수탁책임 보고의 관점으로 이해하든, 혹은 이해 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정보적 관점으로 이해하든, 대학회계에 대한 이용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학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매우 궁색해진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사학의 재무회계에 관한 특례 규칙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며, 환경의 변화를 즉각 반영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

회계는 환경의 산물이다. 환경이 변하면, 회계처리 방법은 변해야 한다. 오늘날의 대학을 포함한 사학의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시장의 개방과 대학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무한 경쟁시대의 도래 및 고졸 학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더 적은 수급의 불균형 등이 그것이며, 기업 이상으로 대학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간의 경쟁은 대규모의 교육

설비 및 고가의 교육기자재에의 투자 확대를 통한 차별화와 특성화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각종 중앙 일간지 등에서의 대학평가 및 서열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지식정보사회 역시 대학으로 하여금 이 분야에 관한 많은 새로운 투자를 게을리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문의 투자는 고가일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의 속도가 급속히 진행되는 관계로, 기능적인 진부화에 의해 자산의 유효 내용년수가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환경의 변화는 특히 사학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의 변화를 요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사학회계는 감가상각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사학의 환경 변화에 따른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회계의 도입 필요성과 나아가서 이 분야에 관한 특례 규칙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감가상각의 의의와 효과

1.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이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원가를 내용년수기간 동안에 합리적·체계적인 방법으로 비

용화 하는 과정, 즉 원가의 배분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감가상각비란 원가를 효익을 받은 기간에 대해 체계적·합리적으로 배분할 때 나타나는 비용이다.

이러한 원가배분개념 이외에도 감가상각의 본질에 대해서는 자본유지로 보는 개념, 용역 잠재력의 감소로 보는 개념 및 소모된 용역의 현행원가로 보는 개념 등이 있다.

미국회계학회의 '장기자산에 관한 개념 및 기준 위원회'에서는 "감가상각은 기간 중 소모된 용역잠재력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현행원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자본유지개념을 감가상각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AAA, 1964). 이 정의는 원초원가에 해당하는 용역잠재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므로서 물리적 자본유지 또는 기업활동 능력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본유지개념에 의한 감가상각은 기초와 동일한 자본을 기밀에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자본유지설로 불리고 있다. 감가상각을 유형자산의 대치를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것도 이 개념에 의한 것이다(AICPA, 1953).

그리고 용역 잠재력의 감소로 보는 개념은, 감가상각이 유형자산의 진부화, 수요변동 등으로 물리적 감가 및 자산의 사용에 의한 소모, 경제적 가치의 감소가 생겨 용역잠재력이 감소하므로, 이를 인식하기 위해 자산가치의 감소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모된 용역의 현행원가로 보는 개념은, 유형자산의 현행원가 또는 대체원가는 역사적 원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주장되는 것으로,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현행원가를 배분한 것으로서 매기의 감가상각은 당기에 소모된 용역의 현행원가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2. 감가상각의 효과

1) 기업의 감가상각의 효과

기업의 경우 감가상각은 이익측정과 자산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계상이 되어서 순이익을 감소시키고, 나이가서는 세금의 절감효과와 배당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감가상각의 세 절감 효과 및 배당 절감 효과는 모두 기업의 현금유출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환연하면, 감가상각은 현금의 지출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를 감가상각의 내부금융효과라 한다. 그러나 내부금융효과는 세금절감으로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이다.

이러한 감가상각의 내부금융효과는 궁극적으로 내용년수가 종료된 후에 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술한 자본유지개념으로서의 감가상각의 본질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감가상각의 이러한 영향 때문에 감가상각은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즉, 세법에서 감가상각에 관한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신규투자를 촉진하거나 경제성장을 높이는 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특별상각과 가속상각법 등이 이러한 관점에서 지지받을 수 있다.

2) 사학의 감가상각의 효과

비영리기관은 법인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감가상각의 세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학에 감가상각회계를 도입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을 운영지출로 처리하고, 동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감가상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첫째, 내부금융효과로서 감가상각비를 운영지출로 처리하는 한편 동액을 해당 자산을 위한 대치기금으로 적립하면, 곧 내부금융효과가 나타난다. 이 경우 기업의 세효과에 의한 간접적인 내부금융효과가 아닌 직접적인 내부금융효과로 기업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내부금융효과로 인해 당해 자산의 내용년수가 종료되면, 대치자금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의 설비투자 및 기자재의 대치가 용이하다. 이는 곧 자본유지효과로 직결되는 것이다.

셋째, 감가상각에 관한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설비 및 기자재에 대한 신규투자를 촉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을 기하는 효과가 있다.

넷째, 합리적인 기간별 등록금 부담 혹은 수익자부담의 형평성 효과가 있다. 즉, 건물 신축, 설비자산 및 고가의 기자재의 취득 등은 경상적인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이 일어나는 특정 기간의 등록금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단기적인 소모성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달리 그 자산의 내용년수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일반적인 원칙에도 합치된다.

III. 사학의 감가상각회계에 대한 논쟁

1. 고정자산 회계처리

기업은 고정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원가주의에 의해 고정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의 경우에는 국고지원 혹은 기부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의 고정

자산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첫째, 고정자산의 취득을 지출로 보아 운영수지계산의 대상으로 처리(즉 시비용화법), 둘째, 총원가로 자본화하는 방법(자본화법) 및 셋째, 절충형으로서, 지출로 처리한 후, 다시 자본화는 방법(비용처리후 자본화법)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에 따르면, 고정자산은 취득과 동시에 자본화하며 대학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고정자산의 자본화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의 대응, 제공한 서비스원가의 계산 등이 가능하여 진다(이동규, 2002).

2. 대학의 감가상각회계 찬반론¹⁾

영리조직과는 달리 사학은 이운동기가 없으며, 기부나 증여 등의 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가상각회계는 대학회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분야이다.

1) 감가상각 반대론

미국회계학회의 '비영리조직회계에 대한 실무위원회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에 대한 반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① 비영리조직체의 목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윤을 획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은 무의미하다. 즉, 수익이 없는 데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것은 모순이다.

② 비영리조직체는 예산적 지출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회계이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현금의 지출이 없으므로 수지예산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비영리조직체는 계속기업이 아니며 연도단위로 활동이 전개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회계에 대하여 주어지는 책임

1) 이동규(2001), "사립대학의 경영과 회계", pp.128~142

은 그 조직체가 대상자산을 얼마나 잘 보존·관리하였는지를 보고하는 데 있는 것이다(AAA, 1971).

③ 감가상각충당금은 현금 또는 기타 자산축적을 의미한다. 만일, 자금이 준비되지 아니한다면 감가상각의 기록은 의미가 없다.

④ 자산의 대체나 기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⑤ 감가상각은 이용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준다. 즉,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그리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부과함으로써 같은 세대가 두 번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⑥ 자산이란 사실, 과거의 관리자가 취득한 것이다. 과거의 관리자가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당기의 이용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불공평하며, 사실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2) 감가상각 찬성론과 감가상각회계의 도입 필요성
대학도 영리조직체와 마찬가지로 활동의 원가로서 당연히 감가상각이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FASB, 1985).

① 감가상각은 자산의 활동원가이지 수익에 비용을 대응시키는 손익산정기법에 관한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수익·비용의 대응개념과 기간별 원가배분의 개념은 다르다.

② 감가상각의 효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감가상각비를 운영지출로 처리하고 동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사학의 일반적인 회계와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③ 감가상각충당금은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의 축적이므로 자산의 축적이 없는 감가상각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위의 ②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④ 자산을 기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학이 일정기간 사용한 자산원가(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를 그 기간에 회수하지 못하면서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당해 대학의 순자산은 점차 감소하게 되어 서비스 제공능력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대학의 특정자산이 기부에 의하여 대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여도, 총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활동을 전개한다면, 당해 대학의 순자산유지는 곤란하게 될 것이다. 기부에 의한 자산도 다른 자산이나 마찬가지로 원가를 발생하는 것이다. 즉, 원가는 취득방법과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다(FASB, 1987).

그리고 한국의 사립대학의 환경은 기부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 논리는 더욱 타당성을 잃고 있다.

⑤ 감가상각은 이용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원가 측정 및 가격설정과 감가상각의 본질을 혼동하고 있다. 즉, 감가상각비를 원가요소로 보아 이를 기록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이용자들에게 이중부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간별 등록금 부담의 형평성을 가져다 준다.

⑥ 기타 감가상각은 기업회계 및 사학의 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발생주의 회계에 일치되는 회계처리이며, 또한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것은 업적평가에 유용하다. 즉,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원가자료는 업적평가에 유용한 정보이며, 만일, 감가상각비가 누락되면,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모든 원가가 반영되지 아니하게 된다. 그리고 감가상각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일 뿐 아니라, 조직의 목적

“

감가상각회계를 도입하게 되면, 내부금융효과로 인한
인정적인 설비투자의 대치자금 적립의 효과, 설비투자에 대한
자본유지효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등록금의 배분 및 등록금 부담의
기간별 형평성의 효과, 진정한 교육원가의 측정가능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이 다르다고 하여도 자원을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는 점은 같다.

따라서 비슷한 거래상황은 조직체의 활동목적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회계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며, 상이한 거래나 환경에 대하여는 상이하게 회계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실체간의 비교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그대로 고정자산회계에 적용될 수 있다. 대학이나 영리조직체를 막론하고 고정자산의 기능이나 역할은 동일하다. 따라서 대학에서도 감가상각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재무보고의 유용성, 신뢰성 그리고 실체간의 비교성은 감가상각의 인식에 의하여 훨씬 더 향상된다(이동규, 2001).

IV. 한국, 미국 및 일본의 사학에 대한 감가상각회계기준의 비교

1. 한국의 회계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제 34 조에 따르면,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유형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무형고정자산에 대

하여는 해당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중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으며,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만 내용연수 동안 균등상각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학회계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식부기의 도입이라는 특례 규칙 원칙에서 벗어나 있으며, 자본유지개념으로 볼 때 타당하지 못하다. 그 결과, 대학의 활동원가 산정이 곤란하며, 장부상의 고정자산이 어느 정도 경과되었고, 장부가치 등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2. 미국의 회계기준

미국의 대학회계는 ① 대학은 손익결정을 할 필요가 없고, ② 세금의 납부의무가 없고, ③ 고정자산은 담보용으로 제공될 수 없고, 자유로운 매각이 불가능하며, ④ 잉여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배당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감가상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NACUBO, 1992).

그런데 최근 미국의 감가상각에 대한 대학회계의 경향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즉 대학감사지침에서도 기금잔액상태변동표의 시설취득기금(Plant Fund)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 보고를 허용하고 있

고, 대학회계기준에서는 단위원가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보충명세서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AICPA, 1973). 이와 같이 미국 대학회계의 경향을 점차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FASB는 기준서 제 93호 비영리조직의 감가상각인식을 공표하여 모든 비영리조직체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미래의 용역잠재력 소비에 따른 원가를 반드시 인식하고 이에 관련되는 ① 해당 기간의 감가상각비, ② 대차대조표 작성일 현재의 주요 상가자산별 잔액, ③ 감가상각충당금, ④ 감가상각방법을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FASB, 1987).

그러나 정부회계기준위원회는 정부회계기준 제 8호를 공포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학(국립, 주립, 시립)은 위 기준서 제 93호를 따를 필요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정부회계기준위원회, 1991). 따라서 주립대학을 제외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특별 기금을 제외하고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3. 일본의 회계기준

일본 문부성령 제 18호 학교법인회계기준에 따르면, 고정자산 중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日本學校會計基準, 1976).

그리고 감가상각에 대한 재무제표상의 계산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투하자금의 회수를 지향하고 있다. 즉, 시간경과에 의하여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감가상각비를 소비지출로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자산 또는 용역의 소비액인 소비지출과 그 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소비수입과의 균형상태를 명백히 하는 데 소비수지계산의 목적이 있다.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소비수지계산을 하는 이유는 학교법인이 대학활동을 전개함에 자산의 소비 또는 이용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각 연도의 자산소비액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당해 연도에 보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계산구조에서 보면, 소비수지계산은 조직체의 재무적 유지의 필요성에서, 그리고 감가상각비의 인식은 투하자금의 회수 또는 자산의 대체나 재취득을 전제로 실시하고 있다. 즉, 계산구조에서는 고정자산의 재취득비를 감가상각비라는 명목으로 소비지출에 계상하고 이를 소비수입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감가상각이 소비지출계산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업회계에서의 손익계산과 같으며, 이 감가상각 회계처리는 비용회수이론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V. 사학에 대한 감가상각 회계기준의 제정방향

사학의 경우에는 이윤동기가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계상에 따른 비용인식과 이에 대응되는 수익개념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사학의 감가상각의 의의는 투하자금의 회수 혹은 자산의 대치 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본질을 자본유지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가상각은 기간 중 소모된 용역잠재력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현행원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회계학회의 '장기자산에 관한 개념 및 기준위원회'에 따라, 기간 중 소비된 용역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자본회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의 감가상각은 당기 감가상

각 측정치를 운영지출로 인식하고, 동액을 당해 자산의 대치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내부금융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감가상각이 종료될 시점에는 적립된 대치자금으로 설비투자 및 기자재의 대치를 보다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사학회계기준 역시 이와 유사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감가상각비의 인식은 투하자금의 회수 또는 자산의 대체나 재취득을 전제로 실시하고 고정자산의 재취득비를 감가상각비라는 명목으로 소비지출에 계상하고 있다.

VII. 요약 및 결론

감가상각회계의 찬반논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늘날의 대학환경에서는 감가상각 반대론자의 주장들이 거의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 비해 기부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사학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감가상각비를 소비지출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사학회계에 있어서 감가상각회계의 도입은 거의 확실하다.

여기에서 오늘날의 무한경쟁시대의 대학환경, 각종 평가 및 자식정보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급속한 기술발전과 기능적인 진부화의 가속화 및 재투자자금의 안정적인 확보의 필요성 및 교육원가의 중요한 부분인 감가상각비의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감가상각회계의 도입은 더욱 필

요하게 된다.

감가상각회계를 도입하게 되면, 내부금융효과로 인한 안정적인 설비투자의 대치자금 적립의 효과, 설비투자에 대한 자본유지효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등록금의 배분 및 등록금 부담의 기간별 형평성의 효과, 진정한 교육원가의 측정가능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감가상각에 관한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설비 및 교육기자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게 되어 교육여건의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단순히 장부상으로만 감가상각을 인식하여서는 기업의 경우와 같은 세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금융효과 등이 나타나지 않는 등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측정액을 운영지출로 계상하고, 동액을 당해 자산에 대한 대치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는 회계처리를 할 때에만 이사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권혁대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목원대에서 기획처장, 대학종합평가위원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경영광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회계정보시스템」 등의 3권의 저서가 있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계속기업에 관한 감사인의 판단업무를 지원하는 퍼지전문가회로망의 개발” 등의 약 4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